

제 언

농약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없는가?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권 元 達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1. 유통실태를 진단한다.

우리나라 농약의 유통구조는 크게 2원화되어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자율화되어 있다. 농약유통기능은 농약이 생산, 이전 또는 생산된 이후에 사용자에게 이르

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장활동으로서 협의로는 생산된 이후의 농약이 사용자인 농민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말한다.

원래 농약수급은 자연현상을 전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급물량이 결정되고 이러한 물량이 기존 유통기관을 통해 유통되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기존 유통기관의 유통기능은 한계에 이르고 되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것이 다른 상품의 유통과정과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농약의 유통주체는 농협과 시중 농약상으로 2원화되어 있고 농협과 시중농약상은 유통주체로서 기능은 동일하지만 그 기능 수행방법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농협을 통한 유통기능은 수급조절이 농협의 계통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부의 정책사업에 소요되는 품목을 주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종합사업의 일부부문으로 수행되고 있다.

시중 농약상을 통한 자유시장거래는 독립적인 농약상을 통해 자기계산하에서 수행되기 때문

에 철저하게 공익성보다는 영리성을 전제로 유통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유통경로를 보면 농협을 통한 경우는 제조회사 → 농협중앙회 → 도지회 → 시·군지회 → 단위조합 → 새마을영농회 → 농가의 경로를 거친다. 농협의 농약살보절차를 보면 단위조합장은 읍·면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거나 리·동단위농약선정위원회와 상의하여 해당지역 농민이 원하는 농약의 품목 및 물량을 결정하여 시·군지회에 신청한다. 시·군지회에서는 신청량을 집계하여 도지회에 계통신청한다. 이를 다시 중앙회에 계통 신청하게 된다.

신청품목 및 물량결정방법은 읍·면단위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총소요량의 65%는 지역방계획, 농민의 기호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하고 35%는 과거의 농약판매와 사용실적을 근거로 농수산부가 농협중앙회에 명년도의 물량확보지시를 하게 되고 농협중앙회는 농수산부의 기본물량수급범위내에서 농약을 확보하여 일반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대체로 물량요청이 이루어지면 제조회사는 단위조합에 직접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도용 농약은 농협을 통해서 대부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시중농약상을 통하는 유통경로는 제조회사 → 중간도매상(제조회사 대리점) → 소매상 → 농민을 통해 유통된다. 이들 농약상은 지역의 수급사정과 농협이 취급하는 물량을 고려하고 농민의 기호와 농민들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물량을 확보하게 되며 여러회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품목이 다양하다.

농협을 통해서 농약을 공급할 때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여 적기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고 약효가 보장되며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농민들이 외상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종류의 품목을 구비하지 못하고 주로 수도용 농약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새마을 영농회를 통한 판매과정에서 취약성을 안고 있다.

농약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기능은 비교적 발전되어 있다. 농약의 보관은 취급상 허가기준에 일정 보관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있으나 소매상 또는 영농회단계에서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 정상적인 판매과정에서 약효가 지난 재고량은 제

조회사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수송과정은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소매상과 영농회단계에서는 자기책임하에 단위조합에서 수송해 주고 있다.

농약의 유통금융은 대부분 제조회사는 농약상에서 2~3개월의 외상판매를 하고 있으며 농약상의 농민판매도 외상거래가 많아서 대금회수에 어려움이 많다.

농약의 유통마진은 품목과 제조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협이 취급하는 경우 8%내외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 농약상은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될 때 3% 차등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10%내외의 마진을 부과하고 있다지만 정확히 알 수 없고 특정품목은 마진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수요예측이 곤란하다.

농약은 그해의 기상상태에 따라 다르고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곤란하다. 따라서 수급관계는 과거의 실적치를 기준하여 농민의 기호도를 감안 결정하고 있다.

금년산 농약수급계획을 보면

전체 확보량은 4 만 6 천 1 백톤으로 확정했고 이중 수도용 농약은 1 만 7 천톤, 원예용 농약은 1 만 8 천 70톤, 제초제 9 천 3 백톤, 그리고 기타농약 1천 7 백30톤으로 확정했다. 농협이 취급하는 수도용 농약은 전체 수도용농약의 57%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다.

전체 농약수급은 1983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수도용은 1981년을 정점으로, 원예용은 1983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제초제는 크게 증가되고 있다.

농약수급에서 확보량과 공급량의 차이인 이월재고량은 1981년 이래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확보량의 17~29%에 이르고 있어 근본적인 수급계획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예용 재고이월량은 13~15%인데 반해 수도용은 35~39%나 된다.

이월재고량이 누적되는 이유는 수급계획상의 과다책정, 유통조직과 판매방식의 미흡, 하향식 구매에 의한 농민기호 무시, 가격조작의 경직성, 대농민 계몽지도와 서비스부족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성을 고려하지 못한 면적중심의 공급체계가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농약의 가격체계는 정부의 가격조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 농약가격은 농협취급농약은 공장도가격에 다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가격으로 확정되며 일반 시판상의 경우는 협정가격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판농약은 농협가격보다 10%내외로 비싸게 공급되지만 공급이 달리는 특징인 기품목은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될때도 있다.

최근의 농약가격은 1982년 이래 동결되고 있으나 원료농약의 수입가격 상승, 환율인상 등으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게 여겨지고 있다.

3. 유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농약유통은 자유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2원적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능상으로나 제도면에서 제조회사에서 농민이 사용하기 까지에는 적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 농약유통상에 행정적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 농약은 정밀화학제품이고 사용상의

독성문제와 농업생산을 위한 필수농업자재란 점에서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에 있어서 엄격한 행정적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농약의 수급 및 유통상에도 정부의 계획범위내에서 조절되고 있다.

또 농약관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농약의 유통관리도 철저히 지켜지도록 규제 관리되고 있다.

농약수급계획도 2월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약수급 계획시기는 일정기간이 소요되지만 농협의 농약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하면 제조회사는 농약원료를 확보하고 제조가공하여 농협과 시중에 공급하게 되는데 수급계획확정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의 농약년도가 10월 1일부터 9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은 수급계획시기를 일찍 확정하자는 의도때문이다.

둘째 : 농약가격이 동결되어있어 원료농약 확보와 제조비와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

농약가격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격동결은 품질향상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가격수준

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은 믿을 수 있는 생산자재의 공급을 바라며 농약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농민들이 잘 사계되는 농업자재가 될려면 다섯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① 기술적 효능이 제대로 나타나는 생산자재라야 하고 ② 믿을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하며 ③ 적절한 가격이어야 하고 ④ 농민들이 꼭 필요로하는 시기에 언제든 살수 있게 농촌지역에 공급되어야 하고 ⑤ 농민들이 요구하는 규격이나 포장의 크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수준이 절대 필요요건은 될 수 없다.

지나친 가격동결은 약효문제, 인기품목 선호, 품질개선이 되지 못하고 난립만 되고 있다.

세째 : 농약공급주체간의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다. 농협과 일반 농약상간의 경쟁은 물론 일반 농약상간에도 지나친 경쟁때문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새마을 영농회를 통한 부락단위 공급은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관 관리·판매대금회수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농약상도 전국에 3,000

여개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영업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각종 농업자재를 소량 집합하여 잡화상식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하지 못하고 있다.

네째 : 농약의 이월재고량이 많다. 1982년 이후 농약 재고량은 감소되고 있으나 수도용농약은 여전히 이월재고량이 많다. 이와같은 현상은 수급상의 과욕에서 빚은 것이고 특히 목표지향적인 농업정책하에서 병충해방제를 없애려는 과잉된 계획하에서 초래된 결과이다. 이것은 방제방법이 비능률적인 원인도 있지만 수급계획시기가 늦게 결정되어 단기간내에 제조공급되어야 하고 제조회사간에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유통과정에서도 농약상은 선입선출(先入先出)의 원칙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지켜지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고량이 늘어나고 약효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 농약의 유통마진이 적절하지 못하다. 알려진 바로는 농협의 농약취급 수수료는 8%로 되어 있고 일반 농약상은 평균 10% 내외라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량취급자인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약상공급보다 3%의 차등공급을 하고 있다. 신개발품목과 경쟁상품은 「마진」을 이 상당히 높고 인기 품목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공급농약이 시중에 유출될 수도 있어 질서있는 유통이 되지 못한다. 농약상의 유통개선은 실제 수익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정유통 「마진」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 외상거래문제다. 농약상은 제조회사로부터 2~3개월 외상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농민 판매과정에서 2~3개월 외상판매를 하게 된다. 농협은 영농회장이 책임지고 판매하고 있으나 일반 농약상은 채권 확보가 어려워 악성외상 대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판매대금회수가 잘되지 않으면 제조회사 변제방법도 좋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협이나 농약상의 대농민 서비스 및 계몽지도 문제이다. 농약은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용 또는 과용에 따라 농작물은 물론 환경오염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대농민 판매과정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계몽지도가 수반되어야 한

다.

농약종류가 300여종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방법만이 약효를 보장하게 된다. 물론 일본의 1,700여종, 대만의 650여종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사용자에게 대한 지도계몽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농약의 수급, 사용, 유통구조는 크게 개선되어 종래의 농약의 양적보급에서 질적보급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발전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인 유통개선점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농약의 수급 및 유통구조상에 정부관리기능은 점차 자율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급계획, 제조, 유통과정에 점진적인 자율화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조절기능이 단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 농약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이 가능하도록 규모화하

고 전문화하여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게 행정적인 유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 농약의 유통기관을 점차 규모화하여야 한다. 공급주체간의 지나친 경쟁은 사회적비용만 증대시키게 된다.

네째 ⇨ 농약의 재고이월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 유통마진을 현실화하여 농협과 일반 농약상간의 균형을 취하게 하고 농약상의 영업수익을 최소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 농약유통금융을 지원하여 농약상의 외상거래의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을 안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협 및 농약상의 대농민 판매서비스와 계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제조회사의 지역실험과 농가단계 전시를 강화하고 사용상의 오용·남용을 방지하도록 농약상의 전문화와 판매사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